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2. 4. 1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4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2년 4월 10일
- 다. 상정일자 : 제87회 임시회 제2차위원회 (2002. 4. 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조한영

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구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도 시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 (안 제21조 제3항 제6호 및 제7호)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한분할면적(90㎡)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구유재산 매각 대상을 확대함.
(안 제38조 제5항 제4호 내지 제6호)
 - 마포구의 지분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 필지내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시유재산 매각 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맞는 내용으로 2001. 9. 29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구유재산도 매각 시에는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일부 불합리한 자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2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구유재산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 면적인 90㎡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인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도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38조제5항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구유지의 지분이 200㎡이하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흙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맞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및 좁고 긴 모양의 단일 필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시유재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과 수의계약에 의한 구유재산 매각 대상을 확대 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매각대상 토지의 인접토지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는가?
- 답변요지(조한영 재무과장) : 이해관계인 모두에게 의사를 타진하여 매수희망인이 다수일 경우 경쟁에 의한 계약, 1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출일자 : 2002. 4.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으로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이 확대되고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내용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구유재산 매각의 경우에도 시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대상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을 확대함.(안 제21조제3항 제6호 및 제7호)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 (2) 건축법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90m^2$)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구유재산 매각 대상을 확대함.(안 제38조제5항 제4호 내지 제6호)

- (1) 마포구의 지분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 필지내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재정법시행령(2001. 9.15 대통령령 제17363호) 제95조 및 제100조
- (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2001. 9.29 조례 제3901호) 제22조 및 제3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임법예고(2002.2.28 ~ 3.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에 제6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7.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제22조제10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중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38조의 조제목 “(수의계약 대상 재산의 매각범위 등)”을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5.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희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②(생략) ③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불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5.(생략)</p> <p>(신설)</p> | <p>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②(현행과 같음) ③-----</p> <p>-----</p> <p>-----</p> <p>-----</p> <p>-----</p> <p>-----</p> <p>1.~5. (현행과 같음)</p> <p>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사회복지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u> <u>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u> <u>법인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u> <u>재산을 매각하는 때</u></p> <p>7. 영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p> <p>④(현행과 같음)</p> |
|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⑨(생략) ⑩서울특별시마포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 한 법인에 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 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 ⑨(현행과 같음) ⑩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p> <p>-----</p> <p>-----</p> <p>-----</p>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생략)</p> <p>③제1항 · 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u>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u> 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 ·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p> <p>④~⑥(생략)</p> |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u>구금고</u>—————</p> <p>—————</p> <p>—————</p> <p>—————</p> <p>—————</p> <p>④~⑥(현행과 같음)</p> |
| <p>제38조(수의계약 대상 재산의 매각 범위 등)</p> <p>①~④(생략)</p>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3.(생략)</p> <p>(신설)</p> <p>(신설)</p> <p>(신설)</p> | <p>제38조(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등)</p> <p>①~④(현행과 같음)</p> <p>⑤—————</p> <p>—————</p> <p>—————</p> <p>1.~3. (현행과 같음)</p> <p>4. 구의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 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p> <p>5.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희지내의 구유지를 당해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이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p> <p>6.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이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때</p> |